

자동차 점검·정비 등 명령서	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	
	주소			
자동차	차명 및 형식		등록번호	
	차대번호			
적 발 내 용				
적발일시 및 장소				
명령 사항	명령사유	☐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제2항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☐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		
	이행방법	☐ 점검 ☐ 정비 ☐ 임시검사 ☐ 원상복구		
	이행기간	년 월 일까지		
임시검사	검사장소			
	검사일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
주 : 점검·정비·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받으려면 이 명령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(임시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)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				